

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기존에는 공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같음하므로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

2. 주요골자

- 조항개정 및 신설
 - ▷ 불용물품을 소요 조회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 결정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고,
 - ▷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같음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.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제100조

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(안)
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
1. ~ 8.(생략)	1. ~ 8.(현행과 같음)	1. ~ 8.(현행과 같음)	1. ~ 8.(현행과 같음)
② ~ ③(생략)	② ~ ③(현행과 같음)	② ~ ③(현행과 같음)	② ~ ③(현행과 같음)
<신설>		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.	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.